

공인경기지도자규정

사단
법인

대한철인3종협회

제1장 공인 경기 지도자

제 1조 (정의) 공인 지도자 (이하 “지도자”라 칭함)은 심신이 건전하고 법적 결격사항이 없으며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모범적인 자로 본 협회가 주최하는 트라이애슬론 경기지도자연수회 과정을 이수하고 탁월한 식견과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하여 자격증을 부여한 지도자를 말한다.

제 2조 (구분) 경기 지도자는 다음의 3등급으로 구분한다.

1. 1급 경기 지도자
2. 2급 경기 지도자
3. 3급 경기 지도자

제 3조 (자격) ① 1급 경기 지도자의 자격은 다음에 의한다.

1. 본 종목 2급 경기 지도자 자격을 가짐과 동시에 2년 이상의 경기 지도 경력에 있는 자로서 소정의 연수과정을 이수하여 자격증을 부여한 자.
2. 본 종목 2급 지도자 자격을 소지한 자로 트라이애슬론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.
3. “제1호 및 2호”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격증을 부여한 자.

② 2급 지도자의 자격은 다음에 의한다.

1. 본 종목 3급 지도자 자격을 소지한 자로 3년 이상의 경기 지도 경력에 있는 자로서 소정의 연수과정을 이수하여 자격증을 부여한 자.
2. 본 종목 3급 지도자 자격을 소지한 자로 트라이애슬론 분야에 관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.
3.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국가대표선수 경력이 있는 자.

③ 3급 지도자의 자격은 다음에 의한다.

1.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와 5년 이상의 경기 경력이 있는 자로서 소정의 연수과정을 이수하여 자격증을 부여한 자.
2. 본 협회에 선수등록 된 팀의 코치 및 감독으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.
3. 트라이애슬론 분야에 관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5년 이상의 경기 경력이 있는 자.

제 4조 (권한) ① 1급 지도자는 다음의 권한을 부여 받는다.

1. 대학팀과 실업팀의 감독과 코치로 본 협회에 등록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.
2. 국가대표선수단 및 주니어대표선수단의 국제대회 및 해외전지훈련 파견 시 감독 및 코치로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.

3. 체육지도 분야의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는 본 협회가 주최하는 경기지도자연수회의 강사로 위촉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.
- ② 2급 지도자는 다음의 권한을 부여 받는다.
1. 중·고등학교 팀의 감독과 코치로 본 협회에 등록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.
 2. 주니어대표선수단과 각종 국제대회의 주니어 감독 및 코치로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.
 3. 본 협회 경기지도자연수회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에 합격하면 1급 지도자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.
- ③ 3급 지도자는 다음의 권한을 부여 받는다.
1. 초등학교팀의 감독과 코치로 본 협회에 등록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.
 2. 전국(소년)체육대회 및 전국종합선수권대회의 시·도 대표 감독 및 코치로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.

제2장 경기 지도자 연수회 위원회

제 5조 (근거 및 명칭) 이 위원회는 본 협회 정관 제45조에 의거 설치 운영하며, 그 명칭은 대한트라이애슬론협회 경기지도자 연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 6조 (기능) 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

1. 지도자 연수회 운영에 관한 사항
2. 지도자 자격검정과 자격증 발급 및 박탈에 관한 사항

제 7조 (조직) ① 이 위원회는 위원장 1인,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자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.

- ②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.
- ③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위원 호선에 의하여 선임한다.
-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, 본회 직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.

제3장 경기 지도자 연수회

제 8조 (과정) 경기지도자연수회 (이하 “연수회”라 칭한다)과정은 1급, 2급, 3급 과정으로 한다.

제 9조 (교과) 교과 과정은 본 협회 회장의 승인을 얻어 경기지도자연수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.

제 10조 (계획) ① 본 위원회 위원장은 연수회 계획을 수립하여 본 협회 차기 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 할 수 있도록 한다.

② 연수회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개최 1개월 전까지 본 협회 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 11조 (등록신청) 경기지도자연수회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본 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.

1. 지원서 1부.
2. 1급, 2급, 3급의 각 호에 규정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.
3. 명함판 사진 2매

제 12조 (기간) ① 경기지도자연수회의 기간은 3급은 30시간, 1급 및 2급은 50시간으로 한다.
② 제8조 과정과 제9조의 교과는 당해 과정의 내용에 따라 본 협회 회장의 승인을 얻어 본 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.

제 13조 (수료증 교부) 본 위원회 위원장은 각 연수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한다.

제 14조 (수강료) 수강료는 본 위원회에서 매회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 15조 (결과보고) 본 위원회 위원장은 연수회 종료 후 개최하는 이사회에서 과정별 연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
제4장 자격 검정

제 16조 (시행공고) ① 지도자 자격검정은 연수회 종료 후 시행하며 년 1회 실시한다.
② 본 위원회 위원장은 검정 시행일 1개월 전에 시행일, 장소, 검정과목 등 기타 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.

제 17조 (원서제출) 지도자의 자격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본 협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검정원서 1통.
2. 연수과정 수료증 1통.
3. 1급은 TOEIC 성적표 1통.
4. 검정시험 면제자는 증빙 서류 각 1통.

제 18조 (방법) 지도자의 자격검정은 교양, 체육발전, 전공과목에 관하여 실시하되 체육일반 과목은 지도자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하고, 전공과목은 트라이애슬론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검정한다.

제 19조 (과목) 지도자 자격검정 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1급 지도자:

- * 교 양(영어 TOEIC) 성적으로 대체
- * 체육일반(체육심리학, 트레이닝론, 스포츠의학, 체력측정평가, 체육행정 및 경
- * 전 공(트라이애슬론 이론 및 실기)

2. 2급 지도자:

- * 교 양(국사, 국민윤리)
- * 체육일반(운동생리학, 스포츠영양, 운동상해 및 구급법, 트레이닝 처방 및 코치론, 체육경영)
- * 전 공(트라이애슬론 이론 및 실기)

3. 3급 지도자:

- * 교 양(국민윤리)
- * 체육일반(체육심리학 개론, 경기지도법(코칭론), 트레이닝의 원리, 스포츠 마사지, 체육행정)
- * 전 공(트라이애슬론 이론 및 실기)

제 20조 (합격 결정)

- ① 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만점의 60%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.
- ② 제1차 검정에 합격한 과목은 재 검정에 면제 할 수 있다.
- ③ 실기 검정은 지도능력의 적부를 판단하여 검정관이 가부를 결정한다.
- ④ 1급 지도자의 경우 영어능력시험(TOEIC) 70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.

제 21조 (등록) 합격이 결정된 지도자는 지도자 등록부에 등재하여 관리한다.

제 22조 (자격증 교부) ① 합격이 결정된 지도자는 지도자에게는 자격증을 발급하여 교부한다.

제 23조 (공인료)

- ① 자격증 취득자는 공인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② 공인료는 100,000원으로 하되 본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인상할 수 있다.

제 24조 (자격 박탈) ①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본 위원회 결의로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.

- ② 트라이애슬론 경기계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트라이애슬론 경기 발전상에 크게 지장을 초래한 자로 상벌위원회의 징계를 받은 자.
- ③ 구타 등 폭력행위로 선수 보호 위원회의 징계를 받은 자.

제5장 공인 트라이애슬론 교실

제 25조 (목적) 트라이애슬론 보급이 확대되는 추세에 편승하여 사이비 내지 무자격 교실의 난립으로 인한 트라이애슬론의 이미지 실추를 막고, 자격을 갖춘 트라이애슬론 교실

에 본 협회 공인을 부여함으로써 건전한 트라이애슬론 발전과 공인 트라이애슬론 교실의 보호 육성에 기여한다.

제 26조 (선정기준) ① 체육 시설업 관계 법령에 준한 시설 구비 요건을 갖춰야 한다.
② 3급 이상의 지도자 자격을 소지한 자를 배치해야 한다.

제 27조 (공인절차) ①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시·도협회를 통하여 본협회에 제출한다.
② 선정된 도장에 본 협회 공인증 교부한다.
③ 공인 도장은 소정의 공인료를 공인증 교부 1개월 이내에 본 협회에 납부.

제 28조 (공인기간) ① 공인 유효 기간은 1년으로 하되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.
② 공인의 갱신은 공인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류로써 신청한다.
③ 공인료는 50,000원으로 하되 본 협회 이사회의 의결로 인상할 수 있다.

제6장 부 칙

제 29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 (2006. 1. 23.)